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·직급 또는 직위에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제 호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1조의2(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세부지침) ① 영 제91조의2 제2항의 위원장은 중앙승진심사위원회(이하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·유지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1조의2(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세부지침) ① 영</u> <u>제91조의2제2항의 위원장은 중</u> <u>앙승진심사위원회(이하 조에서</u> <u>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대표하고</u> <u>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/u> <u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</u> <u>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</u> <u>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</u> <u>대행한다.</u> <u>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</u> <u>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</u> <u>며, 간사는 해양경찰청장이 경</u> <u>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</u> <u>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</u> <u>하고 회의록을 작성·유지해야</u> <u>한다.</u>